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사용자와 동거하며 일가를 이루고 있는 사용자의 처가 일체의 급여 없이 4명의 타인근로자와 상시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총 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A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의 처가 임금을 받지 않고 부부가 함께 경영하는 경우 사업주의 업무형태에 따라 동인의 위임이나 대리 또는 업무를 공동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와의 사용자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는 자이고, 업무명령 불복종시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어야 하는 바 처는 일체의 임금을 받지 않고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총 근로자수에서는 당연히 제외된다.

☞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031-877-7582-3)

Q 방송국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 여부

A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취업할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채용하는 근로계약의 성립 및 작업전반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 사고 시 대체근로자 고용 등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외부제작요원이 방송국과의 전속적 근로계약(출연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 종속적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시간에 방송

국으로 출연하여 해당 부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그러나, 외부제작요원이 방송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부정기적으로 그 때 그 때 방송국의 출연요청에 따라 일시적,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근로자가 자기 집 등에서 원고 드라마 등을 제작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제작요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간에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하진지】 甲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乙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다시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박채무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甲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례에서도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형식적외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

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사기도박 등과 같이 그 불법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닌한 甲은 乙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경료해 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노인의 성문화의 부재

매스컴의 보도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탐폰공원을 비롯해 노인들의 유희가 되다시피 한 대도시 공원의 바가스 아줌마나 인근 야산 등지에서 속칭 산새, 다람쥐 아줌마를 상대로 심심찮게 벌어지는 노인들의 매매춘 행위 역시 이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풍경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흥당의 특색지역은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있으며,

그 이외의 흥당에서도 점차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노년기의 심리적요인과 성욕의 저하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생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고, 성기능 쇠퇴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하여 문도개식 정력제, 강정제 등 보신을 위한 약을 찾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인간은 남녀 구분없이 자신의 성을 중요하게 생각함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문화의 부재는 개인적인 성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인

식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원조교제, 성추행, 성 매춘, 성병 감염, 황혼이혼율 등 왜곡된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황혼이혼이다. 우리 사회는 이혼율의 급증에 따른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황혼 이혼율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해로하시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홀로 된 노인에게 있어서나 노인의 성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독신노인의 증가는 정서적인 문제와 보호문제, 이성교제와 재혼 등의 노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고령화로 인해 특히 여성 노인들의 독신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여성 노인들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노인의성'에서 발췌한 내용임.**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급하고 있고 계약전력이 300KW입니다. 그런데 한전으로부터 최대수요전력이 높아 증설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증설 안내를 해드리며, 안내후 1년 이내에 다시 전력계약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전력을 초과한 두 번째 달부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0%를 추가하여 요금을 받습니다.

새로운 계약전력은 직전 12개월중 기준 계약전력을 초과한 최대수요전력 중 고객이 희망하는 최대수요전력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대수요전력에 의하여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계약전력 결정 기준】 전기요금청구서에 계약전력(KW)이 표시되어 있는데 계약전력이란 무엇이고 결정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계약전력이란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사용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만하는데 계약전력 결정기준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로 하며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중 작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변압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계약전력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 계약전력은 전기사용계약내용에 있어 전기사용장소, 공급방식, 수급지점,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이고 한전에서는 항상 고객의 최대수요에 대비하여 공급설비를 갖추어야 함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공급설비 비용을 기본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는 것임.

Q 【수중전동기 계약전력 선정】 저회공장은 고압으로 전기를 공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외과장 **배준석**



즐을 정복, 단단하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경피적 척추추출술(풍선 확장술)은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에 특수한 풍선을 삽입하여 압박된 척추체를 교정 후 뼈시멘트를 채우는 방법으로 풍선을 삽입하여 척추체를 교정 후 뼈시멘트를 주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척추추출술보다 안전하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은 수술실에서 투시경하에 국소마취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수술 후 단시간의 안정 후 거동이 가능합니다.

척추 성형술후 통증 완화와 조기 거동이 가능해지나 지속적인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Q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A 척추 압박골절의 증상은 심한 허리통증, 옆구리 통증이 대부분이며 압박골절이 신경을 누를 경우는 하지마비와 감각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치료는 장기간 침상 안정과 약물치료, 보조기 착용의 보존적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빠른 통증 완화를 위해 경피적 척추 성형

술로 척추체를 복원하는 시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피적 척추추출술은 약 2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이 발생 또는 진행하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척추압박골절 환자에 대한 시술의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국소 마취하에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골절 부위에 특수한 바늘을 삽입하여 뼈시멘트(뼈강화제)를 주입하여 압박골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법인의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을 경영하던 중 경기불황과 악성채권 누적으로 인한 회사부도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A 국제기본법에는 '법인(비상장법인을 말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제·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중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제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회장, 사장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며, 각자의 지분만큼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 간략히 설명하면 친족으로는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을 말하며, 기타 특수관계인으로는 - 사용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주주의 급전 및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즉 법인은 실체가 없는 인격체로서 법인을 경영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제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법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 2007년 한전포천지점 고압단가(소홀·내촌) 공사 협력업체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최 두 열 대표이사



##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주인의식

-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